

2022년 10월 28일 제정
2024년 2월 2일 일부개정

(사)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

대구의 힘은 예술입니다!
DAEGU POWER IS ARTS



(사)대구예총

FACO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 OF DAEGU

(사)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대구예총)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처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대구광역시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분야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국내외 예술문화교류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토론회 등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교육원 운영 및 정책개발사업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9.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전 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①본 회의 단체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정회원 단체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정회원 자격은 각 정회원 단체의 회원규정에 따르며 확인이 필요할 시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회원)

①본 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단체를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으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특별회원 및 단체는 본 정관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 (회원단체의 의무)

본 회의 정회원단체(정회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정회원 단체는 정관 및 회원명부 제출(회원변경 시 변경명부 제출)

제9조 (징계)

①본 회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대구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대구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전 항의 경우, 본 회 회장이 3인 이내로 지명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자격정지
3. 제 명

④징계 결과 불복 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본 회(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본 회의 회장은 본 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①본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
|----------|---------------------------|
| 1. 회장 | 1인 |
| 2. 수석부회장 | 1인 |
| 3. 부회장 | 3인 이내 |
| 4. 이 사 | 15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 5. 감 사 | 2인 |

-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으며(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위원)는 본 정관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2조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정회원 단체장)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신임단체장이 본회 이사직을 승계한다.
- ② 회장,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 및 조직)

-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소속 정회원 단체장의 추천 또는 입후보자 소속협회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 또는 직전총회 대위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 회 회장의 권한은 선거에 당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대구예총 회장이 4인 이내로 선임하며 현 단체장, 단체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감사는 각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회장 소속 정회원단체는 불가)
 5. 본 회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정회원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정회원단체는 후임 회장이 그 이사직을 승계한다.
- ②회장은 각 회원단체장 및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대구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본 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명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9.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0. 본 회와 유사단체의 회원.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대구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사퇴한 임원이 사퇴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단, 정관에 따른 이사 임기 만료된 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 ①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② 본 회의 목적위배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과 회원단체의 권익 옹호와 발전을 위하여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며, 기타 제 부담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단체별 10명으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현 임원은 소속단체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 된다.)

- ①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본 회 정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년 1회, 2월까지 개최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총회소집은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모바일)로 대의원에게 통보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정관 제16조 4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의 개선 및 해임과 보선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회 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본 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정족수)

①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모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회는 본 정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본 정관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대구예총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규정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결 제척사유)

①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제28조 (정족수)

본회의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①감사는 의결권 없음
- ②이사회에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0조 (세입 등)

①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본 회의 회계연도는 주무관청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단,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당회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한다.)

④결산

본 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감 사)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다.

제 7 장 사 무 처

제32조 (설치)

- ①본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 조직 및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후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 ①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본 회 사무처 조직 및 운영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③사무처장은 본 회와 정회원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조직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4조 (보수)

- ①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 ①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본 조 제①항 정관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 1. 정관변경 사유서
 - 2. 개정할 정관
 - 3. 신·구 조문 대비표

제36조 (인계인수)

본 회의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①전임 회장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회장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 (법인해산)

- ①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 (규정제정)

본 회 정관에 따라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단체로 본다.